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0 - 261호, 제2010 - 262호
2010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안이유

위해 축산물의 수입금지 명령 신설, 도축검사 교육의 무화, 공표 제도 신설 등 축산물위생관리 수준 제고에 필요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닭, 오리 포장의무를 전제로 확대 및 계란 포장 유통 의무화(안 제12조의6)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계란을 포장 유통 의무화 대상에 새롭게 추가함

제12조의6(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닭의 알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에 한한다.

1. 법 제21조제1호의 도축업 영업자
2. 법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 영업자
3. 법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 영업자
4. 법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예외 인정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판매업에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과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세부영업을 신설(안 제21조)

생협과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과 계란을 전문

적으로 수집·포장하여 유통시키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나.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다.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가.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슈퍼마켓·마트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육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다.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바.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품을 해당 업소에서 분할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사. 식용란유통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에 한한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유통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축산물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등록기준 이하의 규모인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슈퍼마켓·마트 등 영업장을 갖춘 소매업을 제외한다.

• 축산물가공장 HACCP 조사, 평가업무를 시도
지사에 위임 (안 제31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출입·조사,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일부 사업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함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직업장등(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직업장등(집업업,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평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닭오리 도축장 책임수의사의 1일검사업무량 개선(안 별표1)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도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도축장에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2만수 이하

나. 2인이 근무하는 경우 :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4만수 이하

다. 3인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 3인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6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1인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2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비고

1.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HACCP적용직업장에 대한 조사, 평가의 방법, 절차 제정(안 제7조의3, 제7조의7)

시·도지사와 기준원장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감시활동·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의 이행 및 기록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부적합한 경우 검역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활성화(안 제8조, 제3조, 제55조의3 등)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던 검사신청, 증명서 발급, 실적보고 등을 원칙적으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의 기술적인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관리제도 도입(안 제22조제3항)

수입신고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검역원장이 유통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축산물 유통관리제도를 도입함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제도 도입(안 제26조제4항)

영업장에 출입하여 수거증을 발급하고 축산물을 수거하던 것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축산물은 배달을 통해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증은 우편으로 발급하거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의 대상 품목 설정(안 제29조의2)

시장의 수요와 생산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소에서 직접 분할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 개선(안 제52조)

사료·원재료의 성분이나 효능·효과를 해당 축산물의 성분이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

는 표시·광고 등을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신설하고, “최고”·“가장 좋은”과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규정들은 삭제하도록 함

•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안 제46조부터 제49조)

기존의 교육 현황·위생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체 영업자 중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 및 식용란유통판매업 영업자로 의무 교육 대상을 한정하고, 매년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원격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 합리화(안 별표5)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항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품질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검사비용을 절감하는 등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11)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 식품위생법과 규제 대상이 유사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 기준과 되도록 일치시키도록 개정

